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자료

▶ 인권교육 개요

- 교육목적 : 노인인권교육 전문화 및 체계화를 통한 노인 관련 기관 및 시설 관계자의 인권 의식 향상 기여
- 교육대상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이수시간 : 매년 4시간 이상
-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 교육방법 : 대면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참고〉 노인인권교육 커리큘럼(총 4강좌 이수, 필수 1강좌, 선택1 1강좌, 선택2 2강좌)

이수구분	강좌명	시간	세부내용
필수 (1강좌)	노인인권의 이해	60분	- 인권의 역사 및 동향, 노인인권의 개념 및 이해, 노인인권 관련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노인인권교육의 필요성
선택 1 (1강좌)	사례로 보는 노인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법	60분	- 인권침해 영역과 범위, 노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국가인권위원회 등 판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요령 및 절차
	생활시설 내 인권 침해사례 및 보호	60분	- 생활시설의 인권 현황과 주요 쟁점, 생활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요령 및 절차, 생활시설 내에서 실천 가능한 인권보호 방안
	이용시설 내 인권 침해사례 및 보호	60분	- 이용시설의 인권 현황과 주요 쟁점, 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요령 및 절차, 이용시설 내에서 실천 가능한 인권보호 방안
선택 2 (2강좌)	노인인권 감수성	60분	- 노인의 특성 및 이해, 노인인권 감수성 향상, 노인차별의 이해
	노인인권존중케어의 이해	60분	- 노인인권존중케어의 이해, 국내외 사례
	치매노인 대상 공공후견제도의 이해	90분	- 치매노인의 노인인권, 노인복지시설의 공공후견제도의 이해(공공후견제도의 법적 근거, 공공후견제도 사례 및 실제), 공공후견인 사회조사보고서 작성법

(필수 1) 노인인권의 이해



1. 인권의 개념과 발달

가. 인권의 개념

- 인권: 인간의 타고난 권리, 모든 개인이 동등하게 갖는 권리
- 권리: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

나. 인권의 발달

구분	사업내용
1세대 인권	사생활 및 통신에 간섭받지 않을 자유, 의견 표현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
2세대 인권	일할 수 있는 권리, 건강 및 행복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등
3세대 인권	평화롭게 살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 등

2. 노인인권의 개념과 영역

가. 노인인권의 개념

- 노인인권-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 좁은 의미- 학대 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넓은 의미- 연령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권리

나. 노인인권의 영역

- 인간존엄권
- 자유권
- 사회권
- 법절차적 권리

3. 노인인권에 관한 국제 동향

가. 비엔나 국제고령화 행동계획

- 인구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능력을 강화하고 노인의 잠재적 개발 능력 등의 필요성을 알림

나.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 1991년 유엔은 독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등 5개 영역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18개 원칙을 제시함

다. 마드리드 국제고령화행동계획

- 모든 사람들이 존엄성을 갖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며 완전한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서 사회에 계속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함
- (정책 방향) ‘노인과 발전,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 확보’

라. 그 외 국제 동향

- 제65차 유엔총회: ‘노인인권보호에 관한 공개실무집단(Open -Ended Working Group on Ageing) 구성을 결의
- 유엔에서는 노인인권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Older Persons) 제정 필요성이 제기

4. 노인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

가. 노인인권 관련 법령 및 제도 발달

연도	내용
1981년	노인복지법 제정(노인복지 관련 서비스 및 정책 추진으로 노인인권 향상, 노인의 기본권을 확보하기 위한 소득보장, 고용기회 제공, 건강보호 등)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노인인권관련 활동 수행)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 2008년 개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6년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발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을 통해 건강, 케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등 노인인권 보호 관련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
2011년	치매관리법
2012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 보장)
2012년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2015년	노인복지법 개정(노인학대관련범죄자의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2016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정

나. 노인인권 관련 주요 법령

- 대한민국 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다. 노인인권 관련 제도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노인인권 관련대책(노인학대방지 대책, 치매 관리종합대책, 독거노인종합지원대책)

라. 노인인권 관련 주요 기관

- 국가인권위원회,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5. 인권감수성과 노인인권교육

가. 인권 관점으로서의 노인복지실천

- 의존적이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

 →

완전한 권리를 가진 주체
- 인권감수성(人權感受性)- 인간의 권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성향으로, 인권 관점에 입각하여 모든 상황을 고려·적용함

나. 노인인권교육의 필요성

- 인권 관점을 통해 노인의 제반 상황을 교육 차원에서 조명함으로써 노인권리 증진에 기여
- 노인인권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노인인권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노인인권 옹호 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주요 매개 역할을 수행
- 최근 노인복지법에 인권교육(제6조의3) 조항이 신설되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이용자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의무화 됨.

(선택1-1) 사례로 보는 노인인권 침해 예방 및 대응법



1.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소개

가.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유

-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를 적극 옹호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합 인권전담 국가기관임
- 설립이유: 인권전담기구로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의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한 행위자를 벌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있음

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및 구제

- 인권침해, 차별행위 및 성화롱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직권으로 조사 가능
-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구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2. 인권침해 영역과 사례 검토

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는 인권침해의 영역

-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 규칙」 인권침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을 말함
- 인권침해 정의에 있어서의 핵심
 - ①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 ②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의 침해를 다룸
 - 보호시설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가 인권위 조사대상이 되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말함

나.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 1)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
 -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 후 노인의료복지시설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문제와 시설내 인권침해 문제가 대두되었음
 - 이에 대해 인권위는 2014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이용자에 대한 학대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함
- 2) 홀로 사는 노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권고
 - 2014년 인권위는 홀로 사는 노인의 인권보호와 관련 돌봄서비스의 지속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함
 -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지속을 위하여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권고함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제도 및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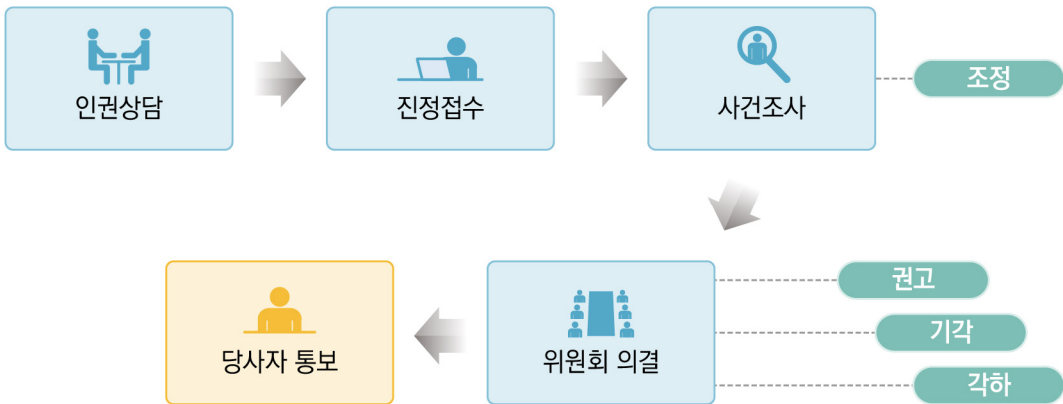
가. 진정제도

- 인권위가 직권으로 인권침해를 조사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다수 ‘진정제도’를 통해서 절차가 진행됨

나. 진정함 설치 의무

- 보호시설의 장 또는 관리인은 이용인에게 인권위 진정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시설내 적절한 곳에 진정함을 설치하여 만일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함

다. 진정접수 및 처리절차



(선택1-2) 생활시설 내 인권 침해사례 및 보호



1. 노인복지생활시설에서의 노인 인권문제

가. “헌법 제10조”에 보장된 모든 인간의 행복추구권(노인인권 관점)

구분	내용
존엄권, 평등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고 차별·착취·학대·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의 잠재능력을 존중받고 이를 활용할 권리
생존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식·주를 보장받고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적절한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
보호 받을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 (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받을 권리
신체의 자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외부 활동에서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프라이버시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통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참정권·종교의자유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문화·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참여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자기결정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권리구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 침해를 당했을 때 권리구제를 요구할 권리

나.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 첫째, 노인은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둘째,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셋째,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넷째,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다섯째,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여섯째,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일곱째,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여덟째,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아홉째,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열 번째,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열한 번째, 정보 접근과 결정권 행사의 권리

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6)의 “노인인권실태조사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에서 제시한 “시설 노인 인권의 5개 영역”

- 건강권, 존엄권, 안전권, 자기결정권, 권리구제

(선택1-3) 이용시설 내 인권 침해사례 및 보호



1. 노인인권의 이해

가. 노인인권의 영역

- 인간존엄권 : 행복추구권, 평등권, 천부적 자유와 존엄, 생명권, 신체의 자유와 안전, 법 앞에서의 평등, 차별 및 학대의 금지 등이 근간을 이룸
- 자유권 : 신체의 자유권, 사생활의 자유권, 정신적 자유권, 경제적 자유권, 정치적 자유권
- 사회권 : 기초생활보장권, 연금수급권, 노후경제생활 교육을 받을 권리, 은퇴준비 교육권, 경제활동 참여권, 적정 노동환경권, 평생교육권, 문화생활권, 사회참여권, 주거권, 건강증진 및 유지할 권리 등
- 법질차적 권리 :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청원권 등 법률상 보호 받을 권리

2. 이용시설 인권침해 사례

가. 서비스 이용 이전 단계

- 기관에 대한 알 권리 보호,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호, 의사표현의 자유 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평등권 보호 및 차별 예방, 서비스 선택할 권리, 자기 결정권 보호

나. 서비스 이용 초기

- 욕구사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제공을 받을 권리 보호, 서비스 선택 계획 수립 과정 참여와 자기결정권 보호,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보호, 적응 지원을 받을 권리 보호, 고충 처리 수용의 권리 보호

다. 서비스 이용 단계

- 건강증진권 및 적정 생활수준 향유권 보호, 위생 및 영양권과 질 높은 급식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 위생 및 영양권과 질 높은 급식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 이동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 문화·여가생활 참여 및 향유의 권리 보호, 평생교육권 보호, 봉사활동에 참여할 권리 보호, 동아리 활동을 지원받을 권리 보호 등

라. 서비스 종결 단계

- 부당한 사유로 탈퇴당하지 않을 권리 보호

(선택2-1) 노인인권 감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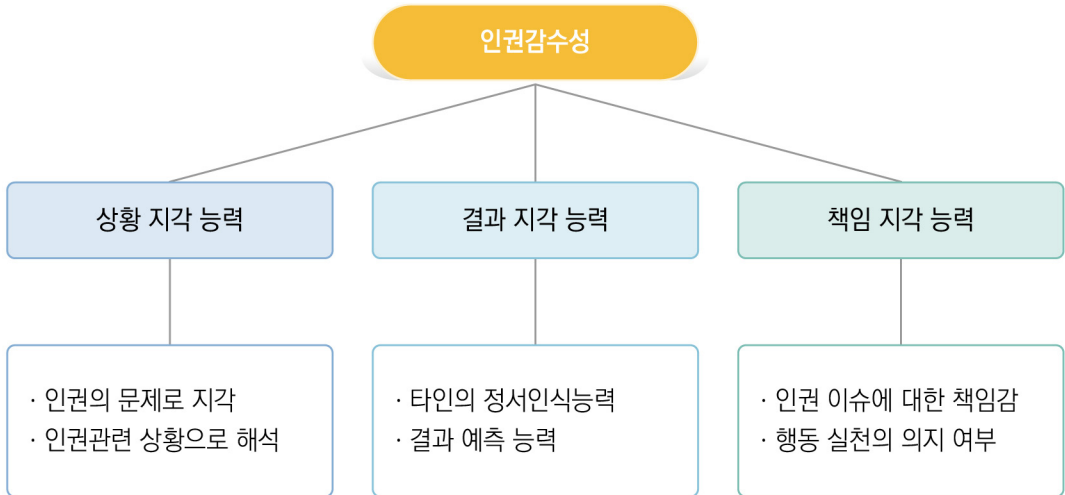


1. 인권감수성의 정의

- 인권문제가 게재되어 있는 특정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의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인식하는 과정

2. 인권감수성 구성요소

가. 인권감수성 구성요소



3. 노인인권감수성 체크리스트

- 가. 자유로운 사회적 활동과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는 권리
- 나. 자유로운 사회적 활동과 건강 추구권
- 다.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자기의사 결정에 대한 권리
- 라.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
- 마.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고 행복을 추구 할 수 있는 권리
- 바. 국가로부터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는 사회권

(선택2-2) 노인인권존중케어의 이해



1. 신체구속과 관련 사례

2014년 5월 28일 장성의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해 입원환자와 직원을 포함해 21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입원환자들은 대부분이 70~80대의 고령자라서 대피에 어려움이 있었고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피해를 키웠다. 이로부터 4년 후인 2018년 1월 26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이 일어났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이다. 이 사건도 장성 요양병원과 마찬가지로 고령화가 진전된 사골 지역의 병원이라 고령자가 많았고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지 않았다. 이 화재로 인해 46명이 사망하고 109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2. 일본의 사례

가. 억제폐지 후쿠오카선언

〈억제폐지 후쿠오카선언〉

1998년 10월 30일

노인에게 자유와 자긍심과 평안을

1. 묶거나 억제를 하지 않는 것을 결의하고 실행한다.
2. 억제란 무엇인가를 생각한다.
3. 지속하기 위해 원인을 공개한다.
4. 억제를 어떻게든 Zero에 가깝게 한다.
5. 억제폐지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간다.

나. 일본 후생노동성 신체구속 zero 안내서 신체구속의 예

〈신체구속폐지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행위〉

1. 배회하지 않도록 휠체어나 의자, 침대에 몸이나 사지를 끈 등으로 묶는다.
2. 낙상을 하지 않도록 몸통이나 사지를 끈 등으로 묶는다.
3. 스스로 내려 갈 수 없도록 침대를 사이드레일로 돌려 쓴다.
4. 수액·경관 영양 등의 튜브를 뽑지 않도록 사지를 끈 등으로 묶는다
5. 수액·경관 영양 등의 튜브를 뽑지 않도록 또는 피부를 긁지 않도록 손가락 기능을 제한하는 장갑 등을 씌운다.
6. 휠체어나 의자에서 흘러내리거나 일어서지 않도록 Y자형 억제대나 허리벨트, 휠체어 테이블을 설치한다.
7. 일어설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기립을 방해하는 의자(휠체어 포함)를 사용한다.
8. 탈의나 기저귀 벗기를 제한하기 위해 혼자 벗을 수 없는 옷을 입힌다.
9.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몸통이나 사지를 끈 등으로 묶는다.
10. 행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향정신성 약물을 과다복용시킨다.
11. 자신의 의사로 열 수 없는 방 등에 격리한다.

3. 학대 발생을 막기 위한 대처 방안

1. 집으로 가겠다는 등의 배회환자에게는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야기를 나누거나 같이 걷는 등 주의를 분산시킨다.
2. 카펫, 쿠션 등을 이용하여 환자가 낙상을 하여도 골절 등 상해를 입지 않는 환경을 만든다.(높이 조절 침대, 너스콜, 바닥재 등)
3. 스킨십, 이야기를 나누며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한다.
4. 라운딩 횟수를 늘린다.
5.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야간에 움직임이 많은 경우(낙상 위험)에는 주간에 침대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지 검토하고 가능한 한 병실 밖에서 생활하도록 지원한다.
6. 환자의 신체기능회복을 위해 재활, 영양 등의 지원을 하여 자립지원을 도모한다.
7. 케어가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곳, 또는 케어를 하기 쉬운 곳에 환자를 배치한다.(침대로 데이 룸에 나와도 좋다.)
8. 경관영양·수액 등에 의지하지 않도록 지원한다.
9. 경관영양·수액 등을 적절한 시간, 장소, 환경에서 지원한다.
10. 경관영양·수액 라인이 보이지 않도록 처치한다.
11. 피부 가려움증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의료 제공, 관리, 가려움증을 잊도록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12. 장기간 휠체어에 앉아 있지 않도록 활동을 연구한다.
13. 환자에 맞는 휠체어를 사용한다.
14. 환자가 이상행동이나 배회를 할 경우에는 그 문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과 목적을 파악한 후 그를 해결한다.
15. 배설패턴을 파악하여 기저귀에 의지하지 않는다.



1. 법률적 기초

가. 법률행위

- 물품의 구입, 서비스(휴대폰, 신용카드, 체크카드, 온라인뱅킹 등) 이용계약의 체결·변경·종료: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의사표시
- 개호서비스 이용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비용의 지급: 요양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의사표시
- 복지시설·요양시설 입소계약의 체결·변경·해제 및 비용의 지급: 거주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필요한 의사표시
- 공법상의 행위(인감증명, 주민등록, 공적의료보험, 국민기초생활수급의 신청 및 갱신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공서에 서류를 신청하거나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의사표시

나. 준법률행위

- 의료행위의 동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환자가 하는 동의
- 거주·이전에 관한 결정: 생활시설 등에 입소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거기서 실제 거주하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그 때 하는 동의의 의사표시
- 우편·통신에 관한 결정: 본인에게 오는 우편물을 대신 수령하거나 개봉하는 것, 전화를 대신하여 받아 본인에 관한 사항을 답변하도록 허가하는 의사표시

2. 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상태적 판단, 결과 중심의 판단, 개별 사안별로 판단하는 기준, 기능별로 판단하는 기준, 장애인권 리협약에서 요구하는 의사결정지원모델, 생각해 보기

3. 치매 공공후견사업에 대한 이해

가. 노인의 인권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지원

- 노인 인권의 핵심 -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자기결정권 행사의 존중에 수반하는 각종의 위험에 대해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

나. 치매관리법에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사업을 규정한 이유

- 이들이 삶을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 치매관리법에 성년후견제도이용지원 사업을 규정

다. 의사결정지원제도로써 성년후견제도를 고령자나 치매환자가 이용하도록 권장하기 위해 이 사업을 치매관리법에 규정한 것일까요?

- 치매가 심해질 자신의 미래에도 자신의 욕구나 선호도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미리 법적인 미래설계를 해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기여하는 것

라. 치매 공공후견사업을 어떤 관점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지원하는 사람,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 분들의 희망, 욕구, 선호도에 법적인 효력이 부여될 수 있게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의 역할을 해야 함

